

#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92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5. 4. 4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업무제휴·협약의 체결방법)

### ○ 추진 필요성

- 법률에 따른 수탁 대상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위탁사무 내용

### ○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

-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조사, 통행량 및 통학 동선 조사,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,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, 도면 작성 등

## 3. 위탁시설 개요

### ○ 관내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116개소 (통합·중복 제외)

구분	합계	어린이보호구역	노인보호구역	장애인보호구역
개소수[개]	116	106	7	3
총연장[m]	61,205	59,265	1,610	330
평균연장[m/개]	528	559	230	110

#### 4. 민간위탁 기간

-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. 12. 31.까지

#### 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수탁기관 : 한국도로교통공단 (경찰청 산하 공공기관)
- 수탁방법 :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

**\* 관련법률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, 수탁기관 선정 심의 생략**

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제외

#### 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비용 : 약 310백만원 (도비 50%, 시비 50%)
  - '25. 3. 5. 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최종 확정내시 및 교부 결정됨에 따라,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회 추경에 확정예산 반영
- 산출근거 : 총연장 61km × 5백만원/1km = 약 310백만원
  - \*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배포 원가산출 내역서 기준

#### 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건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접조사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장조사, 도면 작성, 개선안 수립,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접 수행은 어렵고,</li><li>○ '24년 최초 시행됨에 따라 제도 정착까지는 관련지침을 수립·관리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 필요</li></ul>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</li></ul>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위탁비용은 관련지침에 따른 과업범위에 적합하게 수립된 경찰청 표준원가계산에 근거하고,</li><li>○ '24년 실태조사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 결과물 도출 및 효율성 증가 기대</li></ul>

구 분	검 토 의 건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「도로교통법」을 관할하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써 교통 안전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 활용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등록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성과 측정 가능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도·점검)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이 가능하고, ○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'24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조사로 일반용역사나 타 전문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,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결과 도출 도모
총 합 의 건	'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된 초기단계로, 일반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,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

## 8. 향후 계획

- 2025. 4. :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(시, 한국도로교통공단)
  - 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안 협의 및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

첨부

협약(안)

**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 
보호구역 실태조사 위·수탁 협약**

**남 양 주 시**

**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**

# 2025년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위·수탁 협약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의 목적은 남양주시장(이하 “위탁자”라 함)이 한국도로교통공단경기도지부 경기도지역본부장(이하 “수탁자”라 함)에게 위탁하는 『남양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』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위탁업무 범위 및 재위탁) ① 이 협약에 의한 세부업무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고, 세부 업무추진절차는 “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” 및 설계서 상의 “과업내용서”에 따른다.

1. 교통사고 현황분석
2. 보호구역 시설·통행량 조사 및 문제진단
3.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작성
4.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
5. 기타 분석 및 보고 등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

② “수탁자”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(교통량조사 등)를 “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(위탁기간 및 비용) ① 본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계약 후 협약체결일 ~ ‘25.12.31로 한다. 다만, “수탁자”의 해산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 미발생 시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.

② 위탁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경찰청 “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” 및 ‘원가 계산서’에 따라 산정한 금 310,000,000원(금 삼억일천만원)으로 한다.

제4조(위탁비용 지급 및 사용)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의 위탁비용에 대하여

“수탁자”가 요청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“수탁자”에게 지급한다.  
다만 “위탁자”는 위탁비용의 지급시기와 범위 및 금액 등을 “수탁자”와  
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② “수탁자”는 지급받은 위탁비용을 제2조의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  
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 결과 보고)** ① “수탁자”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 
‘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’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 외에  
“위탁자”가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수행 보고를 요청할 경우  
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  
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를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협약의 변경)** “위탁자”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“수탁자”의  
요청이 있거나,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“수탁자와의  
협의” 및 “의회 동의”를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약의 해지 등)** ① “수탁자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“위탁자”는  
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실태조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,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때
2. 고의·과실로 협약을 위반한 때
3. 관계법령 및 위탁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고의로 위반한 때

②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  
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 협약을  
해지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“위탁자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 
한다.

**제8조(신의성실 의무)**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 
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,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 
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보안조치)** “수탁자”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밀준수 의무)** “수탁자”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“위탁자”의 주요업무 사항을 “위탁자”의 허락없이 제3자나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되며, “수탁자”의 업무담당자 이외에 소속직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손해배상)** ① “수탁자”는 “수탁자”의 귀책사유로 제2조 제1항의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“위탁자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“수탁자”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“위탁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“수탁자”는 실태조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“수탁자”의 부담으로 배상한다.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“위탁자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“위탁자”가 배상한다.

**제12조(민·형사상의 책임 등)** ① “수탁자”는 제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“수탁자”는 과실로 보호구역 내 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“위탁자”에게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“위탁자”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배상하였을 경우 “수탁자”는 그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관할법원)**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위탁자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**제14조(권리·의무의 양도 제한)**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